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및
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06. 12. 18.

관광건설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출자 : 한창동 의원외 7인

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5일
-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5일

상정일자 :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- 2006. 12. 18 : 제8차 관광건설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한창동 의원)

제안 이유

- 자동차 성능검사제도의 개선으로 자동차 매매에 있어 자동차 품질의 보증과 신용질서의 정착으로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중 자동차매매사업자 등록기준에 1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주요 내용

- 자동차 매매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 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업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확보하도록 한 규정과 하자보증금 예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

(관광건설전문위원 유인종)

-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(1999.12.31)개정으로 하자보증금 관련조항 삭제와 자동차 성능점검제도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 매매에 있어 품질보증과 신용질서의 정착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(이하 “매매업”이라 한다)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① 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(이하 “매매업”이라 한다)을 등 록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 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.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과 관련 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 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이상의 보증금(이하 “하자보 증금”이라 한다)을 확보할 것</p> <p>②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 업자는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 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 업자는 각 1인에게 적용되는 면적기준</p>	<p><u>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① 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(이하 “매매업”이라 한다)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 삽 제</p> <p>2. 삽 제</p> <p>②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을 <u>제1항1호의</u>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 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하자보증금의 예치등)①제 4조 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,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.</p>	<p>을 <u>제1항의</u> 규정에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5조 (삭 제)</p>

관 계 법령 발췌

□ 자동차관리법

제53조 (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)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·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 · 환경오염 · 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자동차관리사업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·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(이하 “매매업”이라 한다)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연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
 2.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이상의 보증금(이하 “하자보증금”이라 한다)을 확보 할 것
- ②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5조(하자보증금의 예치등)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 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최소 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,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)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

2.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이상(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1인이상을 말한다)의 정비요원을 두되,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.

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신고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)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(이하 “폐차업”이라 한다)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
2.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, 배수가 용이하며,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
3. 사업장 내·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 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

제8조(폐차영업소의 설치) 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9조(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)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하여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것으로 본다